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736-10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201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4. 11.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
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
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
습니다.

제 출 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201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
과물로 제출합니다.

2014. 11. 30.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김 영 원 ㉠

연구진

책임연구원	경기대학교	윤 종 욱 교수
연 구 원	숙명여자대학교	모 영 규 교수
표본전문가	우석대학교	이 기 성 교수
통계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 영 식 초빙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숙명여자대학교	장 현 희

품질보고서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품질보고서

2014. 11.

차 례

1. 개요	i
가. 품질진단개요	i
나. 통계개요	ii
2. 통계품질 정보	iii
가. 차원별 품질 상태	iii
(1) 관련성	iii
(2) 정확성	v
(3) 시의성/정시성	vii
(4) 비교성	vii
(5) 일관성	viii
(6) 접근성/명확성	ix
3. 결론	x

1. 개요

가. 품질진단개요

이 품질보고서는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일환으로 통계의 품질상태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승인번호: 15205호)에 관한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나타난 통계의 품질상태를 밝혀줌으로써 통계 이용자들에게 이 통계의 유용성을 알리고 통계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상호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여 통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며 출자 및 채무보증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본 연구는 동 통계의 작성환경, 이용자만족도조사, 통계작성절차, 자료의 공표 등에 대한 품질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 통계의 품질향상 방안을 제시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1개의 통계조사가 아니라 2개의 통계조사인 “대규모기업집단출자 및 채무보증현황”과 “대규모기업집단현황”으로 되어 있었다. 이 2개의 통계에 대해 2009년 통계청 통계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통합되어 “대기업집단 지정 및 채무보증현황”으로 변경되어 현재의 단일 통계로 되었다. 이 품질진단에서는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품질관

리 매뉴얼에 따라 통계작성환경의 부문별로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통계품질을 엄밀히 분석함으로써 이 통계의 통계품질 차원별로 그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계품질진단은 통계품질차원으로 구분할 때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 측면에서 진단하게 된다. 정확성은 통계작성자 측면의 품질을 의미하며 관련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비교성, 시의성/정시성은 이용자 측면의 품질을 의미한다. 시의성과 정확성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통계품질진단은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통계품질 목표를 세운 후 통계의 품질을 진단·관리 및 개선점 파악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이행계획을 포함하게 된다.

나. 통계개요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기업집단지정현황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가 자료를 취합,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매년 4월초에 지정·발표하고 있고 채무보증현황은 매년 8월에 발표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01년까지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 순위 30위까지 기업집단을 지정하였고 2002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5조원이상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2008년 7월 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합계 기준도 5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09년 3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재는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고 있다.

2. 통계품질 정보

가. 차원별 품질 상태

차원별 통계품질 상태는 다음의 6개 부문 차원을 진단하게 된다.

- ① 관련성(Relevance)
- ② 정확성(Accuracy)
- ③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 ④ 비교성(Comparability)
- ⑤ 일관성(Coherence)
- ⑥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6개 부문 차원별 품질 상태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명확성 차원은 개선할 부문이 상당 부분 있으나, 나머지 차원에서는 우수한 통계인 것으로 보인다.

(1) 관련성

관련성은 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계자료가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유용한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며 출자 및 채무보증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이 통계는 정책수립 외에도 학계에서는 연구자료로, 일반국민들도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책의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이다.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서는 다섯 가지 문항으로 관련성을 측정하고 있다. 첫 번째 문항은 통계작성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 문항은 기획서 또는 간행물 등에 통계작성 목적이 명확한가 여부, 주된 활용 분야에 대한 명시 여부, 관련 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를 묻는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대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 채무보증현황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공개시스템 등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통계에 대한 사전검토는 국내통계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통계에 대해서는 유사한 통계가 없어 비교나 참조엔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문항은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항은 이용자를 파악하여 이용자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지,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이용자 의견 및 요구사항을 통계작성에 반영하는지를 묻는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통계의 경우 간행물 무료배부처 명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명부,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회원/정책고객 명부, 자료 요청자 명부 등 이용자 목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 간 토론회, 자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개최하고 있지 않았다. 이용자 요구사항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의 시행 등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세 번째 문항은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념 및 분류체계 등이 규정되어 자산총액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상호채무보증 현황을 조사하는 본 통계의 경우 이 문항은 해당사항이 없다 하겠다.

네 번째는 자료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문항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개별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지침 마련 여부, 개별자료 제공자를 예측할 수 없도록 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는지 여부,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등에 대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으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관련 내부 규정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개별자료 제공자를 예측할 수 없도록 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는지 여부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공표하는 것이 주목적인 통계의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 세부문항은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통계작성이 주 업무가 아닌 관계로 통계작성 예산은 따로 편성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의 예산 검토 및 적정한 예산 확보 노력은 없었다. 적정 전문 인력 유지 또는 확보를 위한 노력은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는 없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의 경우 관련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이용자들의 요구 및 이용실태파악이 부족하고 자료를 제공할 때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정확성

정확성이란 추정값과 알려지지 않은 모집단의 참값의 근접성을 말한다. 참값과 추정값의 차이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인데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오차의 크기, 비표본오차의 정도 및 잠정치/확정치 간의 차이를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상의 사항들은 특히 조사통계의 경우 매우 중요한 점검사항들이나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경우 보고통계인 관계로 표본설계 점검과정은 해당사항이 없어 본 통계는 자료수집 과정의 정확성 위주로 진단하고자 한다.

통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확성 점검은 통계작성 개편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통계작성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조사표는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조사항목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자료수집 및 보고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자료수집 시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자료 내용검토(에디팅)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가장 많은 수의 문항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대부분의 정확성 측면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5점 척도에서 5점 및 4점) 기록했으나 통계작성 개편작업 여부,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 실시 여부를 묻는 세부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3점) 기록했다. 통계개편작업의 경우 본 통계는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해 작성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 통계로 통계작성기관 임의로 통계개편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편작업에 대한 계획 및 근거자료를 문서화하고 보관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통계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작성업무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의성/정시성

시의성은 공표시점과 그 자료를 조사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경과 정도를 나타내며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나타낸다. 정시성은 공표한 날짜와 사전에 계획된 공표날짜 사이의 시간 지체 정도를 나타낸다. 통계이용자들이 통계의 공표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일부 주요통계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사전공표일정을 정확히 준수할수록 정시성이 높은 통계라 하겠다.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서 정시성 점검을 위한 문항들은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와 결과 자료의 공표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의 두 문항으로 되어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매년 1월 조사를 시작하여 대기업집단지정은 매년 4월초에 지정·발표하고 있고 채무보증현황은 매년 8월에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시의성과 정시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비교성

통계의 비교성은 시간 흐름과 영역에 따라 자료가 비교되는 정도를 말한다. 시간과 영역의 변화에 따라 포괄범위가 달라지더라도 방법론과 기준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통계가 비교성이 높은 통계이다.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서 정시성 점검을 위한 문항들은 국내·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가, 시계열자료는 연속성이 있으며, 단절이 생길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경제·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의 세 문항이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비교 측면에서 4.7점 (5점 기준) 이라는 높은 점수를 보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작성되는 통계라는 특성상 국내와 해외의 경우 모두 유사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 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통계와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다른 사항으로는 전문 이용자들의 경우 시계열의 단절이 통계의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계열 단절의 문제는 통계자료의 통계기준이 정책변화와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는데서 오는 것으로 통계작성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 일관성

일관성은 서로 다른 출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통계자료지만 동일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경우 각 통계 자료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통계라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일관성 평가 문항은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가,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가의 두 문항이다. 본 통계는 관련 통계와 비교분석을 통해 정합성을 검증하고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고 있어 일관성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5점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에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지정은 유일한 통계이나 함께 제공되는 기업체의 소유·지배구조, 재무현황 등은 기업공시자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통계의 주 제공자료는 바로 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이름이고 해당 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인데 이 통계자료는 유일한 자료이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경우 개별기업들의 보고자료를 집계하여 공표하는 보고통계로 시계열 상의 문제점이나 기타 표본오차 등 통계적 측면의 오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의 기준이 법령에 따라 달라져 통계의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는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6) 접근성/명확성

접근 가능성은 이용자가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활용 가능한 통계표와 그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에 관한 메타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말한다. 명확성은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메타 정보, 예시 및 부수적인 사용상의 조언 등에 대한 결과 충분성에 관한 것이다.

접근성/명확성 차원의 평가는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개편 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조사한 항목을 모두 공표하고 있는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결과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의 네 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공표시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도 일부 통계자료를 올리고 있다. OPNI 사이트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지만 일반이용자들은 용어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련 정책 및 법령변화 등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용어해설이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올려놓은 듯하며 OPNI 사이트의 경우 관련 자료나 파일의 경우에도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이용 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반이용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사항목을 공표하고 있으나 전문이용자들은 좀 더 많은 종류의 보고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이용자들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와 공표자료 사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 필요하다면 마이크로데이터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겠다.

3. 결론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차원별 품질 상태를 진단한 결과 5점 척도로 평점 4.3점이 나와 전체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통계로 진단되었다. 각각의 차원별 항목으로 보면 시의성/정시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는 5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고 비교성도 4.7로 조금 낮으나 역시 높은 점수이다. 접근성/명확성 차원과 정확성 차원의 겨우는 각각 4.3과 4.2로 평균과 가까운 점수가 나왔다. 그러나 관련성 차원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은 점수가 나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성 차원의 낮은 평가는 이용자들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통계에 반영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자료를 제공할 때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이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통계에 반영하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성 측면에서는 통계작성 개편작업 여부,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 실시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계개편작업의 경우 본 통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작성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 통계인 관계로 통계작성기관 임의로 통계개편작업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편작업에 대한 계획 및 근거자료를 문서화 하고 보관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통계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작성업무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접근성/명확성 차원의 점수는 4.3점으로 평균과 같은 점수이다. 그러나 향후 더 나은 품질의 통계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 측면에서 이용자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생산된 통계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통계자료가 제공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을 이용자 위주로 업데이트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요 약 문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정기통계품질진단
주 제 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연 구 기 간	2014.04. ~ 2014.11.
연 구 기 관	한국조사학회
연구진구성	윤종욱, 모영규, 이기성, 장영식, 장현희
<p>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p> <p>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기업집단지정현황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가 자료를 취합,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매년 4월초에 지정·발표하고 있고 채무보증현황은 매년 8월에 발표하고 있다.</p> <p>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차원별 품질 상태를 진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통계로 진단되었다. 차원별 품질상태를 진단한 결과 시의성/정시성 및 일관성 측면은 매우우수, 정확성 및 접근성/명확성 측면은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성 측면은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통계에 반영하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더 나은 품질의 통계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 측면에서 이용자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생산된 통계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통계자료가 제공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을 이용자 위주로 업데이트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p>	

차 례

제 1 장 개요	1
제 1 절 품질진단 개요	1
1. 품질진단의 필요성	1
2. 품질진단 방법	1
3. 품질진단의 전략	3
4. 기대효과	4
제 2 절 통계 개요	5
1. 조사개요	5
제 3 절 중점 진단사항	10
제 2 장 품질진단 결과	13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13
1. 품질관리기반 진단	13
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진단	20
3.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	30
4.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	44
5. 통계자료 서비스진단	47
제 2 절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54
1. 이용자 편의성 제고	54

2. OPNI 사이트 홍보강화	60
제 3 장 개선지원	63
제 1 절 이용자 편의성 제고	63
제 2 절 활용방법	66
제 3 절 해외사례	67
참고문헌	69
<부록>	71
1.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결과보고	71
2. 공표자료 오류 점검표(대기업집단지정)	75
3. 공표자료 오류 점검표(채무보증현황)	81
4.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대기업집단지정)	85
5.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채무보증현황)	91

※ 표본설계 점검 결과보고는 보고통계인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어 부록
에 첨부하지 않음

표 차례

<표 1.1> 품질진단 방법 개요	2
<표 1.2> 통계작성 체계	10
<표 1.3> 2009년 개선방안의 실행여부: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	11
<표 1.4> 2009년 개선방안의 실행여부: 대규모기업집단출자 및 채무보증현황	12
<표 2.1> 통계작성 인력 현황	16
<표 2.2>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 환경	17
<표 2.3> 통계작성 조직관리 실태 및 작성담당자의 인식 정도	18
<표 2.4> 대기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품질지표수	31
<표 2.5> 대기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작성절차별 가중치	31
<표 2.6> 진단점수별 품질수준	32
<표 2.7>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지표	34
<표 2.8> 작성절차별 진단결과표	42
<표 2.9> 품질차원별 진단결과표	43
<표 2.10> 통계품질 개선과제 요약	62
<표 3.1> 개선과제 정리	65
<표 3.2> 사업회사 지분증가율과 자사주 보유비율	67

그림 차례

<그림 2.1>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42
<그림 2.2>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43
<그림 2.3> OPNI 자료 다운로드 에러: Excel 파일 다운로드	56
<그림 2.4> OPNI 자료 다운로드 에러: 파일을 찾지 못하거나 시스템장애	57
<그림 2.5>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 홈페이지: Explorer	58
<그림 2.6>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 홈페이지: Chrome	59
<그림 2.7>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59

제 1 장 개 요

제 1 절 품질진단 개요

1. 품질진단의 필요성

통계법(제17조)에 의거해 승인 받은(승인번호:15205)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상호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여 통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통계이다. 이러한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이 통계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는지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품질진단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2. 품질진단 방법

통계품질은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 측면에서 진단하게 된다. 정확성은 통계작성자 측면의 품질을 의미하며 관련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비교성, 시의성/정시성은 이용자 측면의 품질 지표이다. 시의성과 정확성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통계 품질진단은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통계품질 목표를 세운 후 통계품질을 진단·관리 및 실질적 이행을 위한 방법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계청에서는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진단에 있어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

등 5단계 부분에 대한 품질진단방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 2014) 여기에 실질적인 통계품질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지원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품질진단 대상인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에 대해서도 <표 1.1>와 같이 6개 측면에서 통계품질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에 대한 본 진단팀의 품질진단은 통계청이 제시하는 품질진단 방법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앞으로 조사·발표될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통계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표 1.1> 품질진단 방법 개요

품질관리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현황 및 조적관리 실태 파악 - 인적·물적 자원 확보 현황 파악 - 애로 사항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활용 (작성여건, 담당자 인식조사) ☞ 현장 방문 및 담당자 면담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이용 실태 및 요구 사항 파악 - FGI를 통한 전문 및 일반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 심층면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진단서 활용 ☞ FGI를 통해 해당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 수집
세부작성절 차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 기획 및 설계 - 자료수집 대상 및 기준 설정 - 자료입력 및 처리 - 통계자료 공표, 자료제공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진단서 활용 ☞ 진단팀 진단 실시
수집자료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표본오차 및 오류 점검 - 자료수집시스템의 적합성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진단양식 활용 ☞ 현장 방문 및 담당자 면담 ☞ 발생원인별 비표본오차 점검
통계자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 수치오류 점검 - 이용자 정보제공 충실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자료오류점검 지침 활용 ☞ 이용자편의사항 점검표 활용
개선이행 지원 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생산기관이 실질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개선이행 보고서 활용
종합 진단 및 통계별 품질 개선 전략 제시		

3. 품질진단의 전략

품질진단은 진단 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과 함께 통계품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품질 진단 후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의 품질이 개선되고 통계 작성기관의 사기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적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품질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높은 국가통계작성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뢰성 높은 국가통계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계품질 진단 관련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통계작성기관과 유사 통계작성 예정자가 앞으로 통계품질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 통계품질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품질진단

통계의 작성자와 이용자 당사자들은 통계품질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제 3자에 의한 품질진단과정에서 품질의 중요성을 인지토록 해야 한다. 통계작성자로 하여금 통계작성 과정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도록 하여 약점으로 진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당 통계품질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한다. 통계 이용자 측면에서는 통계를 단순 이용하기보다는 통계 작성과정의 이해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통계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노력한다. 우수한 통계 이용자가 존재해야만 국가통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용자 집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2 진단대상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개선을 위한 품질진단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품질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성 통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문제제기식 품질진단이 아닌 문제 해

결식 품질진단을 추구한다. 한편 단계별 품질개선 방안을 포함한 표준 품질 개선 지침서를 제시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품질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3.3 국가통계품질진단시스템 개선을 위한 품질진단

통계청에서 제시한 품질진단방법은 진단대상 통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품질 진단을 통해 더 향상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3.4 통계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을 모두 고려한 품질진단

이제까지 통계품질은 생산자 측면, 또는 이용자 측면과 같이 한쪽 방향에서 주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품질진단 시 이용자 자문 집단을 운영하여 이용자 측면의 통계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표본설계 전문가를 포함한 통계전문가가 통계 분야를 심층 진단한다.

4. 기대효과

통계작성기관이 품질진단 결과를 종합·분석함으로써 해당 통계의 품질 현황을 파악하고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전반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통계품질 진단과정을 통해 통계작성기관이 통계품질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통계 작성의 자긍심도 고취하며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통계 품질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 2 절 통계 개요

1. 조사개요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개요는 다음과 같다.

1.1 조사목적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상호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동법 제14조제5항에 의해 작성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5205)로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기업집단지정현황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가 자료를 취합,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매년 4월초에 지정·발표하고 있고 채무보증현황은 매년 8월에 발표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01년까지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 순위 30위까지 기업집단을 지정하였고 2002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5조원이상인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2008년 7월 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합계 기준도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2009년 3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소속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2008년 이후)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소속사는 i)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ii)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상호출자 금지, iii)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iv)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소속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2007년 이후)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소속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규제 외에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 (2007년에 이후)를 초과한 국내 타 회사 주식보유 금지하는 규제를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정 기준이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2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2002년 이후 기업집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자산기준의 상향조정 (2조→5조)에 따라 2009년 지정 시 기업집단 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다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9년 48개에서 2010년 53개, 2011년 55개, 2012년 63개, 2013년 62개로 꾸준히 증가). 경제 규모 증가에 비례하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보증제한제도는 채무보증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사가 이를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전면금지한 이후,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신규 기업집단의 지정 또는 회사의 신규편입으로 인한 채무보증만 발생할 뿐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1998년 4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보증 33.6조원은 2002년 4월 1일 까지 모두 해소되었고, 그 이후 신규지정·계열편입으로 발생한 채무보증도 기한 내에 모두 해소되었으며 법상 허용하고 있는 제한제의 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2008년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통계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 통계품질조사 당시는 1개의 통계조사가 아니라 2개의 통계(대규모기업집단출자 및 채무보증현황, 대규모기업집단현황)로 되어 있었다. 이 2개의 통계에 대해 통계청 통계종합정비 계획(통계청 통계협력과-2120호, 2009년 7월 6일 “2009년 국가승인통계종합정비 시행계획알림”)에 의거 통합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명칭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의 단일 통계로 되었다.

1.2 조사 범위 및 대상

1) 조사대상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이 조사대상이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되며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이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다. 기업집단의 범위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인 지배여부 즉, 계열사 여부는 지분을 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체계

조사대상인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의 담당자(주로 회계부서)가 지정관련 1차 자료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관련 1차 자료는 공문과 양식에 동일인 및 신고대리인이 기명날인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제출대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관리시스템(<http://egroup.ftc.go.kr>) 상의 모든 항목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정관련 최종자료는 3월 말까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주총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감사보고서상의 확정수치를 반영한 최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6·9월 결산법인은 전년도 3·6·9월 감사보고서를 사용한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한 인터넷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1차 자료는 2월말까지 공문과 표지양식에 동일인 및 신고대리인이 기명날인하고 다음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대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관리시스템 (<http://egroup.ftc.go.kr>)상의 모든 항목(소속회사 개요, 소속회사 내부지분율, 동일인 및 친족현황, 비영리법인·단체현황, 소속회사 임원현황, 소속회사 주주현황, 업무담당자 현황 등)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한다. 이때 계열회사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 중인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현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차 자료제출시 모든 기업집단(기 지정집단 포함)의 당해 기업집단의 신고업무를 총괄하는 회사(집단담당자가 소속된 회사)는 신고대리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대리인 신청서는 한 페이지에 모든 소속회사가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형식 또는 소속회사(신고대리대상회사)별로 별도의 페이지에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형식 모두 가능하나, 당해집단의 모든 소속회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비계열사 주식 1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계열사에 대한 상세한 보유주식현황을 양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특히 자료 제출 시 동일인의 친족 및 소속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주식현황을 누락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신고대리인은 반드시 친족 및 소속회사의 임원의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하여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총액이 4.5조 원부터 5.2조원에 해당하거나, 특정 회사의 계열여부가 지정에 영향을 주는 기업(집단)으로서 당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여부가 불분명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여부 유권해석 신청서'를 제출한다.

최종자료로는 1차 제출자료 일체와 감사보고서, 동일인 확인서를 3월말까지 제출한다. 이때 1차 제출자료는 확정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수치 등을 반영하여 해당 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12월 결산법인은 전년도 12월 감사보고서, 3·6·9월 결산법인은 전년도 3·6·9월 감사보고서를 사용한다.

1.3 조사 결과 공표 및 통계 작성체계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별도의 간행물에 실리지는 아니하고 보도 자료를 통해 공표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http://www.ftc.go.kr>), 통계청 e-나라지표 사이트 (<http://www.index.go.kr>),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http://groupopni.ftc.go.kr>) 등에 DB로 공표하고 있다. 통계작성체계를 살펴보면, 통계의 작성기획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에서 하며 통계자료수집은 공정거래법상 해당하는 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문서로 신고하게 된다. 이 신고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에서 취합하고 처리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공표한다.

<표 1.2> 통계작성 체계

		기관명(소속부서)
작성기획		기업집단과
자료 수집 및 보고	자료수집	기업집단과
	취합	
	검토	
	입력	
	보고	
자료처리		기업집단과
결과분석·공표		기업집단과

제 3 절 중점 진단사항

중점 진단사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본 통계에 대한 과거의 품질진단 결과를 검토해보고 이와 비교하여 이번 품질진단에서 중점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1개의 통계조사가 아니라 2개의 통계조사인 “대규모기업집단출자 및 채무보증현황”과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으로 되어 있었다. 이 2개의 통계에 대해 2009년 통계청 통계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통합되어 “대기업집단 지정 및 채무보증현황”으로 변경되어 현재의 단일 통계로 되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통합 전인 2009년에 “대규모기업집단출자 및 채무보증현황”과 “대규모기업집단현황”의 2개 통계로 품질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때 도출된 개선과제와 이행사항은 <표 1.3>과 <표 1.4>에 각각 정리되어 있다.

<표 1.3> 2009년 개선방안의 실행여부: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

개선과제	실행방안	실행여부 점검
지정기준 변화에 따른 시계열의 연계방안 마련	시계열 분석을 위해 과거에 지정되었다가 제외된 집단과 과거에 제외되었다가 현재는 지정된 집단을 명기하고 이 집단들 전체의 통계도 개별적으로 취합하여 제공 또는 일본의 예처럼 특정한 소수의 상위집단만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계열자료를 분석하여 제공	2009년 하반기
관련 유사통계의 통합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검색하고 분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2009년 하반기
메타정보 보완	통계표, 그래프 상의 단위 표기 개선 Meta 정보의 제공확대	2009년 하반기
OPNI 자료제공 방법 개선	OPNI 상에서 세부적인 개별자료 뿐만 아니라 통합, 가공한 정보의 제공 필요	2009년 하반기
통계 홍보의 강화	공정위 기업집단정보포털(OPNI)에 대한 홍보 강화	작성중지 후 통합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 통계의 경우 다섯 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어 네 개의 과제인 지정기준 변화에 따른 시계열의 연계방안 마련, 관련 유사통계의 통합, 메타정보 보완, OPNI 자료제공 방법 개선은 2009년 하반기에 이행되었다. 통계 홍보의 강화의 경우 작성중지 후 통합되었다.

대규모기업집단출자 및 채무보증현황통계의 경우도 총 다섯 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어 두 개의 과제인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신규지정 집단 분류 추가, 통계 메타정보 수정보완은 2011년 상반기에 이행되었다. 그러나 세 개의 과제인 통계정보 및 자료이용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방안 마련,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ONPI 홍보 강화, 자료검색방법 안내는 작성중지 후 통합되었다.

<표 1.4> 2009년 개선방안의 실행여부: 대규모기업집단출자 및 채무보증현황

개선과제	실행방안	실행여부 점검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신규지정 집단 분류 추가	보도자료에 신규 지정집단에 대한 설명 신규지정 집단을 미포함한 통계 대한 분석추가	2011년 상반기
통계 메타정보 수 정보완	통계 정보 등 변경 발생 시 e나라 포탈 및 보고서에 즉시 반영(사이트우측 또는 pop-up창 등으로 이용자가 즉시 알림) 보도자료 내에 ‘채무’ 파트의 용어설명 강화(보도자료 상의 출자파트 수준으로) OPNI사이트에 용어에 대한 설명 페이지 추가	2011년 상반기
통계정보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방안 마련	Q/A 를 위한 사이트 운영 방안 검토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질문을 가능하게 함	작성중지 후 통합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ONPI 홍보 강화	OPNI 사이트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보도자료 및 e나라 포탈에 OPNI에 대한 소개 및 링크 명시	작성중지 후 통합
자료검색방법 안내	OPNI 사이트에 DB이용에 대한 매뉴얼 제공 또는 각 검색 메뉴별 대한 안내추가(사이트상)	작성중지 후 통합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에 대한 2009년 품질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권고사항의 많은 부분은 이행되었고 나머지 과제들은 두 통계의 통합에 의해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으로 이행되지 못한 개선과제들 중 통계정보 및 자료이용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홍보 방안 마련은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품질진단은 보고통계라는 통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계의 정확성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위주로 접근성과 명확성에 중점을 두고 특히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제 2 장 품질진단 결과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1. 품질관리기반 진단

1.1 진단 개요

품질관리기반에 대한 진단은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을 실시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제반여건을 진단하는 것이다. 통계작성 환경이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이다. 품질관리기반 진단에서는 이 통계의 기본현황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의 물적·인적 통계작성 여건을 검토한 다음, 조직리더의 조직관리 실태, 담당자의 인식 등을 점검한다.

품질관리기반을 진단하기 위해 먼저 작성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면담일정을 협의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하였다. 담당자 면담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에서 제공한 품질관리기반 현황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기관 담당자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기반 현황표의 재작성 및 보완을 요청한 후 현황표 집계 및 자료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였다.

1.2 기본현황 진단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통계법 제 17조에 따라 승인된 지정통계로, 승인번호는 제 15205호이며, 작성기관 및 주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

업집단과이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조사주기는 1년으로서, 조사 기준시점은 조사년도 전년도의 12월이다. 조사대상 사업체는 결산법인의 결산주총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감사보고서상의 확정수치를 반영한 최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만 3·6·9월 결산법인은 전년도 3·6·9월 감사보고서 사용한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조사시점은 매년 4월경으로 조사기간은 1차 자료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최종자료는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조사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인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대규모기업집단(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한 인터넷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조사자료는 공문과 양식에 동일인 및 신고대리인이 기명날인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제출대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관리시스템 (<http://egroup.ftc.go.kr>)상의 모든 항목(소속회사 개요, 소속회사 내부지분율, 동일인 및 친족현황, 비영리법인·단체현황, 소속회사 임원현황, 소속회사 주주현황, 업무담당자 현황 등)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조사결과는 별도의 간행물에 실리지는 아니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http://www.ftc.go.kr>), 통계청 e-나라지표 사이트 (<http://www.index.go.kr>),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http://groupopni.ftc.go.kr>) 등에 DB 형태로 공표하고 있다.

품질관리기반 현황표에 보고된 기본현황의 내용을 기초로 점검해 보았을 때 통계청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 국가통계로서 승인받은 제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통계작성 여건 진단

1) 인적 자원 여건

통계담당 인력현황 및 관련사항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는 통계생산이 주 업무가 아니라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이 주된 업무이다. 기업집단과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 대규모기업집단의 관련 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정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의 개발,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동, 지주회사의 신고요령과 심사기준의 설정·운동
-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지주회사 관련 규정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집단과의 인원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 1인 외에 5급 4인, 6급 4인 등 총 9명이다. 통계작성 업무전담 정도는 과장은 10%, 5급 4인은 20%, 20%, 10%, 10%, 6급 4인은 10%, 10%, 30%, 50%로 통계전담 인력은 없다. 통계관련 업무경력은 평균 1년 4개월로 짧으며, 현 보직 근무연수는 평균 1년으로 통계업무경력과 함께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3년간 통계교육 이수실적은 평균적으로 3회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 통계작성 인력 현황

(2014년 5월 현재)

직급	통계작성 관련 담당업무	통계 업무 전담 정도	현 보직 근무연수	통계업무 경력	통계교육 이수실적 (최근 3년간)
과장	총괄	10%	2월	2월	-
5급	대기업집단지정통계 발표	20%	1년 2월	3년 10월	3회
5급	채무보증통계발표	20%	1년 2월	10월	3회
5급	통계자료검증	10%	2월	2월	3회
5급	통계자료검증	10%	1년 2월	2월	3회
6급	통계자료검증	10%	2월	2월	3회
6급	통계자료검증	10%	2년 2월	2년 2월	3회
6급	대기업집단지정통계 발표, 채무보증통계발표	30%	8월	2년 1월	3회
6급	통계자료관리 등	50%	2년 2월	2년 2월	4회
평균	-	20%	1년 월	1년 4월	3회

현재의 인적자원 여건은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 작성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부족한 면이 있다. 평균적으로 통계업무 경력과 현 보직 근무연수가 대부분 1년 이하로 통계업무의 전문성의 부족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향후 통계작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 등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있다.

2) 물적 자원 여건

통계작성 관련 예산규모는 따로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기업집단과의 주된 업무가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이고 통계작성은 부수업무인 것에 기인한다.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현황을 보면, <표 2.2>와 같이 통계생산에는 대기업 집단 입력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서비스에는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를 운영하고 있다. 통계작성만을 위한 특별한 운영장비나 분석패키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2>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 환경

통계업무단계	통계생산	통계관리	통계서비스
시스템 명칭	대기업집단 입력 시스템 (egroup.ftc.go.kr)		기업집단공개시스템 (groupopni.ftc.go.kr)
운 영 장 비			
통계분석패키지			

1.4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 인식 진단

통계관련 조직 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에 관한 설문 응답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조사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조직관리 실태 측면을 보면 통계작성기관의 조직관리 실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통계작성 담당자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조직관리 실태 관련 5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통계작성 및 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통계의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이 통계가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인 중요한 통계라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조직관리는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본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담당자의 통계업무 여건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면 평균 3.8점으로 통계작성 여건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계작성 업무를 위한 예산과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확보 여부에 대해서 “보통”으로 인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업집단과의 주 업무가 통계작성이 아니고 동계의 성격이 보고통계인 점을 반영한다고 해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통계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여 통계업무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통계작성과정에서의 품질고려는 “그렇다”라고 답하여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 2.3> 통계작성 조직관리 실태 및 작성담당자의 인식 정도

질문 내용		점수 (5점만점)
조직 관리	기관장의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비전과 가치관 제시 정도 및 역할의 측면	5
	부서장의 통계품질관리 필요성 인식 및 품질개선 추진 정도	5
	부서장의 통계품질관리 비전 달성을 위한 계획, 목표 수립 및 시행 정도	5
	작성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 정도	5
실태	통계담당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 개발 및 품질관리 참여 정도	5
	평균	5.0
통계 담당 자 인식	현재 맡고 있는 통계업무량의 적정성	3
	현재 통계작성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3
	현재 통계작성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확보 정도	3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정도	5
	통계작성 과정에서 품질 고려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평균	3.8

1.5 통계작성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

면담을 통해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담당 부서장은 담당업무의 기초가 되는 통계의 품질개선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담당 부서장과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이 통계의 담당자는 본 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점에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통계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충실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통계작성이 주 업무가 아닌 부차적인 업무인 관계로 조사관 일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담당자의 통계자료관리 전담도도 50%에 불과해 통계전담인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취합하고 공표하는 보고통계라는 통계의 특성상 표본추출이나 자료가공 등에 연중 내내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통상 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고 공표하는 매년 2월~4월, 그리고 7~8월 사이의 기간이 피크이고 이 기간에는 담당자만이 아니라 기업집단과의 다른 부서원들도 통계작성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자의 주 업무도 통계작성과 관리는 아닌 관계로 여전히 전담인력 부족문제는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얻은 결론은 통계전문 인력이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업집단과의 경우 통계작성과 관리가 주 업무가 아닌 관계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 또한 적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보고사항을 검증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가 과중하고 5~6명의 인원이 각 기업들의 재무, 손익, 주주 및 친족 구성현황 등을 모두 검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품질관리기반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통계품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통계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보고통계의 특성상 단기간에 통계작성 업무가 집중되기는 하나 전담인력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통계의 일관성 및 품질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통계작성 및 관리가 부수업무이기는 해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로 자료제출 사업체들은 “대규모기업집단관련 통합 업무매뉴얼”을 참조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뉴얼은 인쇄본 형태로는 제공되지 않으며 단지 파일로만 제공되고 있다. 매해 새롭게 매뉴얼을 인쇄하여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신규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인쇄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작성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텐데, 그 중에서도 정확한 자료제출 제고를 위해 예산의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진단

2.1 진단 개요

생산되는 통계가 이용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는 통계품질 진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통계는 이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이용자는 통계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를 원한다.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가진 통계이다. 따라서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여 품질진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의 이용자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시로 이용자가 해당통계를 만족스럽게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계생산자가 간과하고 있는 통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부문 진단은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이용자들의 통계자료에 대한 만족

도를 확인하고, 요구 및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이용자 측면의 품질진단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부문의 진단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통계작성에 반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를 위하여 통계 관련 이용자들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s; FGI)을 실시한 다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진단을 실시한다.

2.2 표적집단면접(FGI)

표적집단면접(FGI)은 소집단을 형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계획적이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를 말한다. FGI는 전문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 총 2회를 실시하였다. FGI 참여자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는데, 1차 전문이용자 FGI에서는 공정거래, 규제, 산업정책 연구 등에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을 이용하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부분 경제전문가가 참여하였다. 2차 일반이용자 FGI에서는 이용자들이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http://groupopni.ftc.go.kr>)에서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DB 및 여타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 보고 그 경험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FGI에서 논의된 내용은 6개 품질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FGI에서는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차원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1) 1차 전문이용자 FGI

전문이용자 FGI는 2014년 6월 3일(화요일)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 321호에서 실시하였다. 참석자는 학계에서는 기업규제와 법경제 전문가인 경제학과

교수, 기업재무 전문가인 경영학과 교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규제연구담당 연구위원, 법무법인의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 6명과 통계품질진단팀 2명, 참관인 1명이었다.

전문이용자들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연구에 본 통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상호)출자제한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대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출자관계가 기업전체의 지배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에 관한 연구에 통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기업집단지정 및채무보증현황은 이러한 연구에 있어 분석의 대상을 정하고 연구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매우 유용한 통계라는 공통된 의견이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에 대한 전문사용자 집단의 경우 관련성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통계가 의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의성/정시성에 대해서도 문제나 개선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사용자들은 현재의 대기업집단지정 4월 공표와 채무보증현황 8월 발표가 적절하며 특별한 개선사항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비교성에 대해서도 유일한 통계자료인 관계로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대기업집단지정 기업의 목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통계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재무정보나 이사회관련 통계는 다른 통계자료(기업공시자료 등)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본 통계에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의 정확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부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의 목적이 학술적·정책적 연구를 지원하는데 있지 않고 상호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제한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을 위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있으므로 이 통계를 단독으로 이

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통계의 유용성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이용자들은 우선 공표되는 통계의 기준이 각기 달라 자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 있다고 지적하였다. 1987년부터 2001년까지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 순위 30위까지 기업집단을 지정하였고, 이후 2002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5조원이상인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1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합계 기준도 5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09년 3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재는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만 지정하고 있어 통계의 일관성이 없다. 이 지정기준은 법령에 의한 것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통계 자체로만 본다면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통계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이용자들은 지정기준의 변화와 통계의 특성상 기업집단의 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과거와 같이 10대 또는 3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좋을 것 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신규 지정되는 기업과 지정에서 해제되는 기업을 표시해주고 해제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주면 유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사항으로는 계열사 지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공되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본적인 사항들 외에 사업자 번호, 상장여부 등이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이용자들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관한 정보, M&A 관련 및 기업 히스토리 관련 정보, 이사회 및 의장에 대한 정보(CEO인지의 여부, 급여 및 보수 등), 이사회 의 횡수(몇 년 간 몇 번, 처리한 안건의 개수 등), 사외이사(평균임기 등)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통계의 연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지분에 대한 정보가 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지분구조가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본 통계가 통계작성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작성 목적과 연구자들의 통계이용자 입장 간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다. 본 통계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기초자료라 공정위의 입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하지 않게 공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집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해야 하는지는 심도 있는 토론이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방대한 양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한 후 제한된 자료만 공개하는 것은 전문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문제로는 여러 해에 걸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한 해씩 자료가 제공되어 사용상의 불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익스플로러에서 자료를 내려 받을 경우 자료파일을 내려 받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의 설치가 요구되어 에러가 발생하고 크롬 등 타 웹브라우저에서는 내려 받기 자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료 제공 시 2001년 이전 데이터는 PDF 파일로만 제공되고 있는데, 이 역시 엑셀 등으로 제공되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 있다 하겠다.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이용자들은 사용하기에 통계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 등은 문제가 없으나 일반이용자 기준으로는 친절한 설명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특히 채무보증 관련 용어들은 일반사용자에게는 상당히 생소할 것으로 판단되니 도움말 등을 통한 충분한 가이드가 제공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통계의 생산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사용자들에게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을 때 많은 이용자들이 생산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었는데 자료수집 과정 및 통계 생산과정에 대한 자료제공은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지적으로는 정확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되는 데이터와 기업공시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이용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개별 기업의 결산시기와 자료수집 시점간의 차이나 지분율변동 시점과 자료수집 시점간의 시차에서 지분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지적으로는 대기업집단지정 소속회사명에 다소의 오타가 있는데 특히 외래어 회사명의 경우 “H”와 “K”의 오타 혹은 회사명이 다른 경우도 있어 주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는 전문사용자 집단이 꼽는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가장 큰 유용성 중의 하나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회사명을 확인하는 것인데 회사명의 오타는 이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자료의 공포에 앞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2) 2차 일반이용자 FGI

일반이용자 FGI는 2014년 6월 27일(금요일) 숙명여자대학교 행파교수회관 세미나실 410호에서 실시하였다. 참석자는 경제학, 경영학, 법학 전공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일반사용자그룹 6명과 통계품질진단팀 2명, 참관인 1명이었다.

일반이용자그룹 FGI의 경우 전문사용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측면보다는 접근성/명확성의 차원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일반이용자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반이용자들은 OPNI 사이트에 방문해서 사용해보면 개선점은 많으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공통적인 의견이었

다. 특히 주제별로 기업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있고 기업별로도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어있는 점은 편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이용자들의 지적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계를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통계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 문제는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의 주 업무가 통계작성·관리가 아니라 통계전담 인원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홍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접근성의 문제로는 제공되는 엑셀 파일에 일부는 필터가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는 필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필터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사용자가 다시 재편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 다운이 가능함을 알리는 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탭을 눌렀을 때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뷰어로 제공되는 자료 중 일부만 엑셀파일로 제공되는데, 무엇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통계자료 검색과 관련한 문제로는 한 창에서 모든 정보를 처리하여, 여러 창을 통해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통계청의 통계정보 사이트와 비교할 때 각 자료별 책임 담당자의 연락처가 없어 통계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각각 다른 자료별로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불편도 호소하였다.

또한 일반이용자들은 OPNI 사이트의 탭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OPNI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반 검색사이트에서 해당 용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기업지정현황에서 나타나는 순위의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주제하의 순위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다른 문제로는 공정거래정책 관련 법령 변화 등에 따른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자료가 2008년까지만 제공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2009년에 폐지되었다는 등의 언급이 없어 최신 데이터가 없는 이유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사외이사 관련정보도 일반이용자들은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낮은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일반인들은 공정거래/경쟁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교육컨텐츠도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제공되는 정보의 중요성 및 유용성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거나 만화와 함께 제공되어 일반인 사용자가 그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한 눈에 쉽게 정보가 파악되도록 플래시 파일 등을 이용한 정보의 이미지화를 시도하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그 외에도 일반 이용자들은 불편사항으로 OPNI 사이트의 글씨가 작아 가독성이 낮고 홈페이지가 컴퓨터 스크린에 맞게 커지지 않고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 너무 작다고 불편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용자질문 및 답변 (Q&A), 고객의견 등의 페이지/메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다른 사이트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OPNI 홈페이지 하단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OPNI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관련 사이트와의 링크 기능은 많은 일반이용자들이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하여 주기적인 확인과 사이트 주소 업데이트를 통해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다른 지적으로는 검색기능이 불편하다는 사항이었는데 해당 사이트의 정보와 관련 없는 검색어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할 경우 인기검색어로 뜨거나 엑셀 파일을 받고 싶어 검색을 하는 경우에도 보도자료나 통계청 사이트만 검색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3) FGI 요약 및 개선의견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보고통계라는 특성상 정확성이나 시의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본 통계는 조사대상 기업체의 재무담당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관리시스템에 조사 자료를 입력하고 이 입력 자료를 출력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사 자료는 기업체의 기업공시자료를 통해서도 공표가 되는 사항으로 통계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시의성도 매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조사되고 공표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1) 전문이용자 그룹의 개선의견

전문이용자들의 지적 및 개선의견은 일관성과 정확성, 그리고 연구활용성 측면에 집중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 i) 통계의 기준이 관련법의 개정·변화에 따라 바뀌어 기존 자료와의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대 대기업 혹은 30대 대기업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존에 포함되었던 기업들의 자료와 항목을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
- ii) 좀 더 다양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으로 특히 가능하다면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좋겠다.
- iii) OPNI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볼 경우 현재 한 번에 한해의 자료만 볼 수 있는데 엑셀을 통해 여러 해에 걸친 자료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2) 일반이용자 그룹의 개선의견

전문이용자들의 의견이 일관성과 정확성, 그리고 연구활용성에 집중된 것

과 비교하여 일반이용자들의 지적은 주로 접근성, 명확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의견은 다음과 같다.

- i) OPNI 홈페이지를 사용자를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현재의 OPNI 사이트는 최초 웹사이트 구축 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대화면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OPNI 홈페이지가 모니터 크기에 따라 조정되지 못하여 불편한 점이 있어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 ii) OPNI 사이트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의 종합 포털사이트로 기능하기 위함이나 제공되는 많은 정보가 일반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눈에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제공되는 정보에 일반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래시 파일 등을 이용한 정보의 이미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iii) OPNI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 및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이 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례를 들어 소개하는 등 일반사용자가 그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iv) OPNI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

3.1 진단 개요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진단에서는 통계작성 과정이 이 통계의 본래 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통계품질을 확인한다. 먼저 품질관리 매뉴얼이 제시하고 있는 보고통계에 대한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를 작성하여 통계품질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품질요소 및 근거를 기술하여 진단한다. 여기서는 통계작성과정을 7개 부분의 작성절차별(① 통계작성 기획, ② 보고통계 설계, ③ 자료수집, ④ 자료입력 및 처리, ⑤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⑥ 문서화 및 자료제공, ⑦ 사후관리) 및 6개 부분의 품질차원별(① 관련성, ② 정확성, ③ 시의성/정시성, ④ 비교성, ⑤ 일관성, ⑥ 접근성/명확성)로 구분하여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관리 매뉴얼의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에는 보고통계의 경우 총 31개의 품질지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이들 질문은 각각 작성절차별로 7개 부분으로 구분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6개 품질차원별 부분으로도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 (보고통계용)의 31개 지표 가운데 3개 지표는 진단통계인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에는 해당되지 않아 제외하고 품질진단에 사용한 질문은 <표 2.4>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작성절차별/품질차원별로 총 28개가 해당된다.

품질진단에서 제외한 3가지 지표는, <통계작성 기획> 절차에서 '1-3.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절차에서 '6-3.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 이용자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후관리> 절차에 속하는 지표 중 '7-4. (행정조사이면서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 통계조사가 완료된 후 수탁

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는가?’의 3문항이 ‘해당없음’으로 제외되었다.

<표 2.4>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품질지표수

(단위: 개)

작성절차 품질차원	통계작성 기획	보고통계 설계	자료 수집	자료 입력/처리	자료분석 /평가	문서화 /자료제공	사후관리	합계
관련성	2					1	1	4
정확성		3	3	3	1	1	1	12
시의성/정시성						2		2
비교성	1				2			3
일관성					1	1		2
접근성/명확성	1					3		4
기타							1	1
합계	4	3	3	3	4	8	3	28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 품질지표의 수준을 5점 척도로 표시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 (1점)로 구분된다. 이렇게 5점 척도로 평가된 각각의 품질지표에 작성절차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통계의 품질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작성절차별로 적용된 가중치는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작성절차별 가중치

통계작성 기획	보고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합 계
15.1	17.9	16.6	11.4	15.1	14.9	9.0	100.0

<표 2.6> 진단점수별 품질수준

진단점수	품질수준	수준의미 및 관리체계
90점 이상	우수	- 유지 체계 중점 관리, 정기품질진단 대상 제외, 자체진단으로 품질관리 - 조직개편, 인프라 변동 등 품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시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품질수준 점검
80~90점	양호	- 중점개선과제 발굴 추진, 우수로 진입이 가능토록 품질진단
70~80점	관심	- 개선노력이 필요하여 양호수준으로 진입하는 정밀진단 실시
60~70점	주의	- 집중관리로 정밀진단을 통해 1차 관심, 2차 양호수준으로 지원
60점 미만	미흡	- 통계부실로 총체적 차원에서의 정밀진단 및 지속강화 추진 * 다만, 계속 미흡수준을 유지할 경우 통계 폐지 검토 (삼진아웃제)

품질진단 결과 작성절차별 진단점수가 나타내는 품질수준 및 그 의미, 관리체계 등은 <표 2.6>에 설명되어 있다. 진단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품질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기품질진단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자체진단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조치한다. 80점대는 품질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점개선을 통하여 우수단계로 진입을 유도하고, 70점대는 관심대상으로 양호수준 진입을 위한 정밀진단의 대상이 된다. 60점대는 주의단계로 집중관리 대상이 되고, 60점 미만은 미흡한 수준으로 추후 개선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통계의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3.2 세부 작성절차별 진단 결과

1) 작성절차별 품질지표 평가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의 진단절차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를 바탕으로 진단팀이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을 하게 된다. 작성절차는 통계작성 기획, 보고통계 설계, 자료수집, 자료 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되며, 각각의 질문항목에 대해 5점 척도의 평가를 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5점 척도는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3)', '아니다(2)', '매우 아니다(1)'로 구성된다. 품질진단항목을 작성절차 및 품질차원별로 실시한 결과는 <표 2.7>에 정리하였다.

(1) 통계작성 기획

□ 통계작성 목적 제시 → 그렇다

대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 채무보증현황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공개시스템 등에 통계작성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통계는 국내의 대기업 규제정책 수행을 위한 통계로 해외의 경우 유사한 통계가 없어 비교나 검토대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통계작성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관련통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 → 보통

간행물 무료 배부처 명부와 마이크로 데이터 요청자 명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처리하였다. 본 통계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매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표가 되고 있다. 이용자 요구 파악에 대한 세부 항목 중 고객명부, 토론회 실시, 이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지표

작성절차	보고통계 품질진단 지표	품질차원	5점 척도
1. 통계작성 기획	1-1. 통계작성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관련성	4
	1-2.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관련성	3
	1-3.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관련성	해당없음
	1-4. 국내·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가?	비교성	5
	1-5. 통계작성 개편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확성	3
2. 보고통계 설계	2-1. 통계작성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정확성	5
	2-2. 조사표는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정확성	4
	2-3. 조사항목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정확성	5
3. 자료수집	3-1. 자료수집 및 보고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정확성	5
	3-2.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3
	3-3. 자료수집 시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5
4. 자료입력 및 처리	4-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확성	4
	4-2. 자료 내용검토(에디팅)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4
	4-3.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정확성	5
5.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5-1.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가?	일관성	5
	5-2. 시계열자료는 연속성이 있으며, 단절이 생길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비교성	4
	5-3. 경제·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	비교성	5
	5-4.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5
6. 문서화 및 자료제공	6-1.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정확성	4
	6-2.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접근성/명확성	5
	6-3. 개편 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접근성/명확성	해당없음
	6-4. 조사한 항목을 모두 공표하고 있는가?	접근성/명확성	4
	6-5.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시의성/정시성	5
	6-6. 결과 자료의 공표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시의성/정시성	5
	6-7.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결과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접근성/명확성	4
	6-8. 자료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관련성	2
	6-9.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가?	일관성	5
7. 사후관리	7-1.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가?	관련성	3
	7-2.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확성	3
	7-3. 통계 작성방법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및 개선을 하고 있는가?	기타	5
	7-4. (행정조사이면서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 통계조사가 완료된 후 수탁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는가?	기타	해당없음

□ 통계작성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 검토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항목이다.

□ 국내·국제적 표준화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 사용 → 매우 그렇다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가 국내 및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 통계자료 검증을 위해 제출받는 개별회사들의 감사보고서, 주주현황, 채무보증현황 등을 참고하여 통계 조사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통계작성 개편작업의 적절성 → 보통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편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편작업에 대한 계획 및 근거자료를 문서화 하고 보관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통계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작성업무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보고통계 설계

□ 통계작성대상 정의의 명확성 → 매우 그렇다

대기업집단관련 통합 업무매뉴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부분에 기준시점과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작성기간도 잘 지켜지고 있다.

□ 기입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한 자료수집 및 보고양식 설계 → 그렇다

대기업집단관련 통합 업무매뉴얼과 대기업집단지정 관련 서식에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고,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용어해설도 포함되어 있어 응답자가 이해하고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가승인통계 로고 및 작성승인번호를 넣어줘야 한다.

□ 양식의 변경 시 사전검토 → 매우 그렇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내부와 외부의 통계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고 있다.

(3) 자료 수집

□ 자료수집 및 보고양식 작성요령 제공 → 매우 그렇다

대기업집단관련 통합 업무매뉴얼과 대기업집단지정 관련 서식에 상세 지침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업무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고 예시도 충분히 제시되고 있어 작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 실시 유무 →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자료수집의 체계적 관리 → 매우 그렇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보고기준시점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보고 및 처리기준 시점은 잘 지켜지고 있다. 보고서 자료 취합은 매년 2~4월, 대규모기업집단지정 보도자료 공표는 매년 4월 1~15

일 사이에, 채무보증현황 DB 공표는 매년 8월로 2013년 및 2014년의 경우에도 잘 지켜지고 있다.

(4)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 입력의 표준화된 체계 마련 → 그렇다

입력오류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기능은 없지만 보고통계의 특성상 기업체의 (재무·회계) 담당자들이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오류에 대한 검증은 기업공시와 감사를 통해 되고 있다는 전제로 작성되고 있다.

자료 내용검토 작업의 체계적 실시 → 그렇다

회사별 감사보고서 및 채무보증실적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현황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작성이 기업집단과의 주 업무가 아니어서 통계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은 없다.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 → 매우 그렇다

회사별 감사보고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조사기업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5) 자료 분석 및 품질평가

관련통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자료결과 검증 → 매우 그렇다

회사별 감사보고서, 채무보증실적확인서를 통하여 검증한다.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 확보 및 단절 시 내용 설명 → 그렇다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이용자들의 경우 시계열의 단절이 자료이용에 있어 큰 문제 중의 하나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시계열 단절의 문제는 통계작성 기준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에서 오는 것으로 단순하게 통계작성에서 발생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 경제·사회 현상 및 통계작성 변경의 영향 분석 → 매우 그렇다

통계자료에 정책변화와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최종 통계자료의 체계적 검증 → 매우 그렇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현황 보도자료, 회사별 감사보고서 등과의 대조를 통해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수치 정확성이 검증되고 있다.

(6) 문서화 및 자료 제공

□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문서화 → 그렇다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다. 통계작성 방법 변경 등 제반 내용은 대규모기업집단관련 통합 업무매뉴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현황 보도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지침서 및 통계작성 절차별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간행물에 이용자들의 편의 사항 수록 → 매우 그렇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현황 보도자료,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 사이트에 통계의 작성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과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 등은 잘 정리되어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이용자들이 용어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련 정책 및 법령변화 등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개편 작업 후 개편내용 공개 → 해당 없음

해당없음 항목이다.

□ 조사한 모든 항목 공표 → 그렇다

전문이용자들은 좀 더 많은 종류의 보고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나 정보의 공개범위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연구자들의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요구를 처리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결과 자료의 공표 시점 적절성 → 매우 그렇다

결과자료는 적절한 시기에 공표되고 있다.

□ 결과 자료의 공표절차 준수 → 매우 그렇다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년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공표하고 있다.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결과자료 제공 → 그렇다

보도자료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표로 종이책 보고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보고서 구입방법 및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절차 공지 여부는 공지하고 있지 않다.

□ 자료 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 장치 유무 → 아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으며 전문이용자들은 제공되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 및 차이의 요인 설명 → 그렇다

동일주제의 다른 통계와 비교하고 있으며, 또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사후관리

□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대응 가능한 통계작성 체계 관리 → 보통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적정 전문 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인사조치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통계 생산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 유무 → 보통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통계 담당직원의 교육이 부족하고 근속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의 주 업무가 통계작성이 아니라 통계 생산 전문성 유지 및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

□ 지속적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유무 → 매우 그렇다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 회의와 외부전문가의 자문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수탁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조사관련 자료 제출 → 해당 없음

해당없음 항목이다.

2) 작성절차별 통계품질체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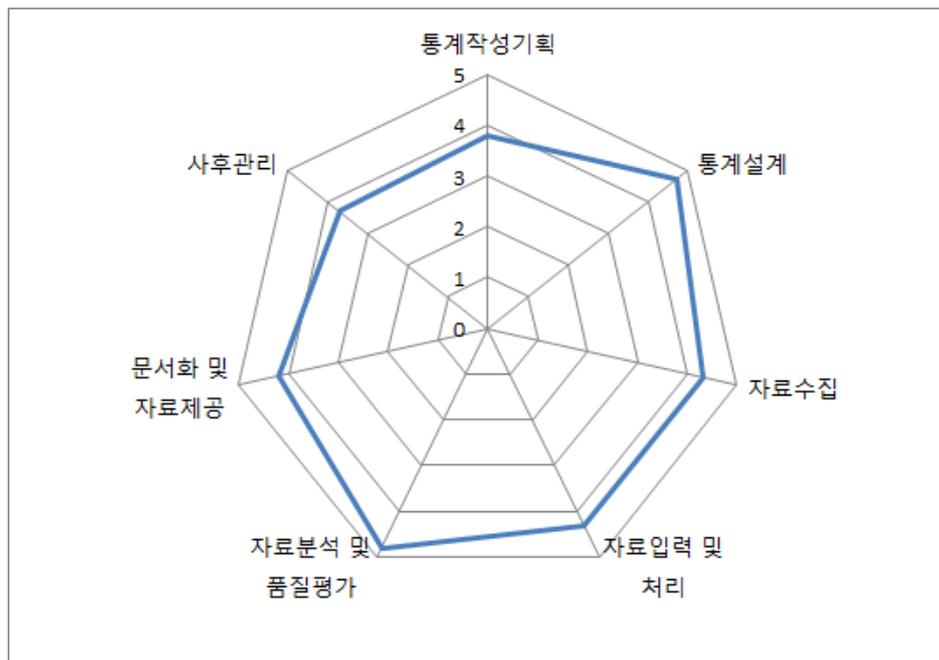
평가 결과는 기본적으로 5점 척도에 따른 수치와 가중치를 적용한 100점 만점 기준 점수로 나온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표 2.8>과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등의 작성절차는 5점 척도로 보면 모두 4.0점을 넘었고 평점이 4.3점으로 우수한 통계로 평가할 수 있다.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는 4.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통계설계>가 그 뒤로 4.7점을 기록했다. <자료수집>과 <자료입력 및 처리>는 4.3점을 그리고 <문서화 및 자료제공>은 4.2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통계작성기획>과 <사후관리>는 각각 3.8점과 3.7점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절차별 품질진단 결과 개별 절차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통계품질을 100점 만점으로 볼 때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86.0점인 것으로 나와서 품질수준이 종합적으로 볼 때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표 2.8> 작성절차별 진단결과표

구 분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평점
5점 척도	3.8	4.7	4.3	4.3	4.8	4.2	3.7	4.3
가중치 적용	11.4 (15.1)	16.7 (17.9)	14.6 (16.6)	9.8 (11.4)	14.3 (15.1)	12.7 (14.9)	6.5 (9.0)	86.0 (100.0)

주 : 괄호 안은 각 절차별 점수의 만점



<그림 2.1>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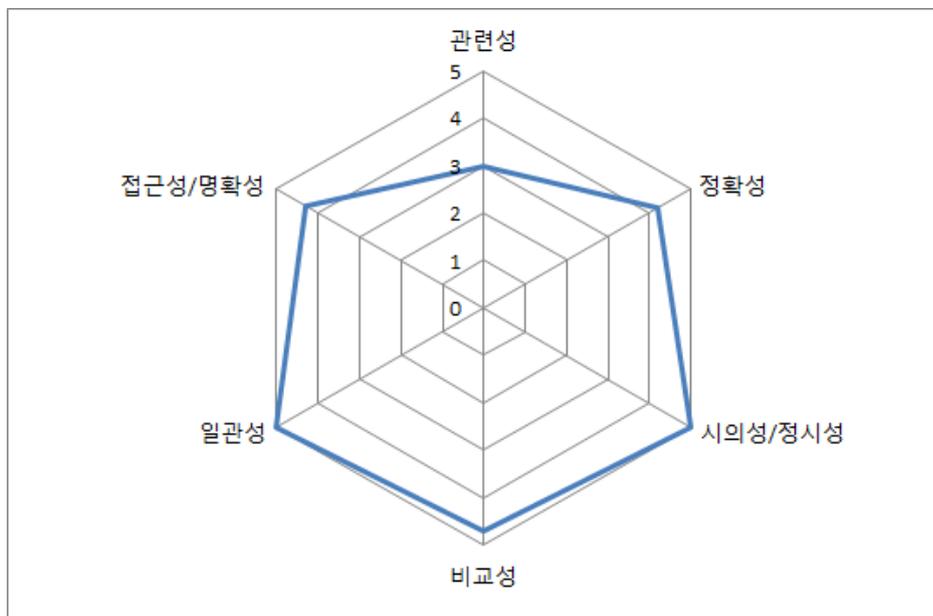
3) 품질차원별 통계품질체계 평가

품질진단 결과를 6개 품질차원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9>와 <그림 2.2>

에 나와 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품질차원별 평가에서 <시의성/정시성>과 <일관성>은 5.0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성> 차원에 대한 평가가 3.0점으로 낮게 나타나 전체적인 평가점수가 하락하였다. <관련성>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는 이용자들의 요구 및 이용실태파악이 미진하고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개선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자료를 제공할 때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표 2.9> 품질차원별 진단결과표

구분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평점
5점 척도	3.0	4.2	5.0	4.7	5.0	4.3	4.2



<그림 2.2>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4.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

1) 개요

통계의 정확성에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정확히 조사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등의 점검은 통계품질진단에 있어 중요한 점검대상이 된다. 보고통계에서는 자료 수집이 조사대상의 보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오차 유형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사기획자와 응답자(보고자)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현장조사 실태를 직접 확인·파악하여 수집자료의 정확성을 진단한다.

자료수집 정확성 점검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의 통계담당자(조사기획자)를 면담하면서 현장점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의 협조를 얻어 9개 사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정확성 점검결과

(1)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자료수집은 응답자(보고자)에 의한 인터넷과 서류제출을 통한 보고가 주된 방법이다. 조사대상인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의 담당자는 지정관련 1차 자료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관련 1차 자료는 공문과 양식에 동일인 및 신고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제출대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관리시스템 (<http://egroup.ftc.go.kr>)상의 모든 항목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정관련 최종자료는 3월 말까지 공정

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주총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감사보고서상의 확정수치를 반영한 최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6·9월 결산법인은 전년도 3·6·9월 감사보고서를 사용한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경우 보고절차 및 방법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관련 통합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자들은 매뉴얼의 설명이 자세하게 잘 작성되어 있어 질문 및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다소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섞여있는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주었다. 조사에 대한 응답(보고) 드는 시간은 1시간 이내라는 대답이 주었으나 계열회사의 수가 많은 경우 공정위 시스템에 주주를 개별 주주별로 입력하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응답이 있었다. 다른 개선사항 의견으로는 서버확장을 통한 속도개선이었다. 신고마감이 임박하면 접속량증대로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서버확장을 통하여 개선하였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몇몇의 개선의견 외에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장 점검 및 관리체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상호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동법 제14조제5항에 의해 작성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조사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이다.

자료수집 역할 분담 체계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보고자가 인터넷과 우편을 통하여 보고한 내용을 조사담당자가 취합하고 확인하여 공표하는 방식을 취한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자를 위한 보고절차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대규모기업집단관련 통합 업무매뉴얼’이 제공되고 있다.

(3) 조사원 관리

본 통계는 보고통계로 조사원이 응답자를 직접 대면조사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4) 응답자 관리

본 통계는 보고자(응답자)가 배포된 매뉴얼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고 시스템에 사항들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보고자는 각 기업집단의 재무 담당자들로 기업의 공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라 특별한 응답자 관리는 없어 해당사항 없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담당자와 응답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첫째, 가능하다면 서버의 용량 확장을 통한 속도개선이다. 신고마감이 임박하면 접속량증대로 서버의 응답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자료입력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서버확장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복된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문제도 개선할 점이다. 연중 변동사항을 입력해도 1~3월에 보고 시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둘째, 보고시스템에 Excel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계열회사의 수가 많은 경우 공정위 시스템에 주주를 개별 주주별로 입력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보고시스템에 Excel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고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출력하는 경우 계열사별 자료를 일일이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출력 기능을 가능하게 하면 보고서 출력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

5.1 점검 개요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은 평가대상 통계의 보도자료, 보고서 및 DB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주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 및 빈도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진단에서는 이용자들이 간행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통계자료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점검은 부족한 편이므로 본 통계품질진단을 통하여 통계자료 서비스에 대한 충실성 진단을 엄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매년 초에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기업집단지정은 4월, 채무보증현황은 8월에 공표한다.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대한 점검은 통계청에서 제공한 품질관리 매뉴얼에 있는 공표자료 오류 점검표와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를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5.2 진단 결과

1) 공표자료 오류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은 ① 수치자료, ② 통계표 형식 및 내용, ③ 용어해설 ④ 기타오류로 나누어진다. 각 사안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표시기가 대기업집단지정은 4월, 채무보증현황은 8월 공표로 이 두 개의 통계에 대해 각각 진단하였다.

< 대기업집단지정 >

(1) 수치자료

- 통계간행물과 DB의 수치일치 여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공개현황과 보도자료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연도별 기업집단 지분 및 지정현황'에서 계열사수가 2008년, 2012년, 2013년 각각 1씩의 오차가 발견되었다.

-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항목의 경우 표 6, 표 11에 2007년 데이터가 빠져 있으나 데이터 빠진데 대한 이유가 없었다. 통계작성방법 변경이 공표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는지의 경우 e-나라지표의 경우 통계작성방법이 있으나, 보도자료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의 일치성 항목의 경우 우선 보도자료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e-나라지표와 비교시, e-나라지표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통계와 보도자료 데이터와 불일치하는데 다음과 같았다.

표 11, 2006년 4월 합계 : 1,117 → 873.5

표 11, 2006년 4월 평균 : 18.9 → 14.8

표 11, 2011년 4월 합계 : 1,741.9 → 1554

표 11, 2011년 4월 평균 : 31.7 → 30.7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 주석표시의 합리성 항목에서는 보도자료 p.2의 장기 연도별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에서 단순히 금액기준 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구분 유무, 폐지 여부 및 시기 등도 필요한 정보이나 누락되었다

- 자료 출처의 명확성 항목의 경우 통계표나 그래프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3) 용어해설 부분

- 용어의 적절성 항목의 경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4) 기타 오류

- 기타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국제기구 제공자료

- 유일한 통계로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 채무보증현황 >

(1) 수치자료

- 수치자료의 경우 e-나라지표와 보도자료를 비교한 결과, 12년 4월 수치에서 0.1조원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e-나라지표의 경우 통계작성방법이 나와 있으나 보도자료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통계수치의 정확성의 경우 표 1, 2, 5, 7의 합계가 1만권의 오차가 있는데 이는 반올림, 반내림 등의 계산방법 때문으로 보이나,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의 일치성의 경우 보도자료 표4의 경우 바

로위에 서술된 채무보증 해소의 확대와 보증만기 합계액의 수치가 달랐다.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 단위표기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보도자료 표 7 해소율관련 단위 %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 자료 출처의 명확성 항목의 경우 통계표나 그래프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3) 용어해설 부분

- 용어의 적절성 항목의 경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 용어의 통일성의 경우 대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보이나,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었다.

- 보고서에 조사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문판 용어 해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4) 기타 오류

- 기타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국제기구 제공자료

- 유일한 통계로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2)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앞의 공표자료 오류점검과 같이 대기업집단지정과 채무보증현황에 대해 각각 진단하였다.

< 대기업집단지정 >

(1) 이용자를 위하여

- 보도자료에는 이용자를 위한 소개부분이 없으나 e-나라지표에서는 통계상 유의점 및 각 정의상 유의점이 있었다.
- e-나라지표는 '관련용어'에서 용어 해설이 서술되어 있다.
- e-나라지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라고 출처가 명시되어 있다.
- e-나라지표는 '관련파일'을 통해 다른 매체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도록 파일링크를 걸어두고 있다.
- 보도자료의 서두에 담당 직원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다.

(2) 조사 정보

- 통계목적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보도자료의 '4. 14년 기업집단 지정 의의'에서 추론 가능하다.
- e-나라지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에서 주석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 보도자료는 서두에서, e-나라지표는 '작성방법'에서 수집 및 지정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 보도자료는 서두에서, e-나라지표는 '지표설명' 및 '지표해석'에서 작성항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명시하고 있다.
- 대상기간, 실제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으나, e-나라지표에서는 '통계주기'를 매년이라 명시하고 있다.
- e-나라지표의 '자료 출처' 외에 조사 방법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 e-나라지표는 '관련용어'에서, 보도자료는 '별첨'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 구체적인 공표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3) 모집단 및 표본 설계

- 보도자료는 별첨 'I. 지정개요'에서 목표 모집단 간략히 기술하고 있으며 e-나라지표는 '의의'에서 목표 모집단 추론이 가능하다.
- 보도자료는 서두와 첨부자료에서, e-나라지표는 '통계표'와 '작성방법'에서 조사의 실제 조사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4) 자료 집계 및 추정

- 해당사항 없음

< 채무보증현황 >

(1) 이용자를 위하여

- 이용자를 위한 소개내용은 없으나 다만, e-나라지표에서 '유의점'이 간단히 명시되어 있다.
- 보도자료는 '붙임'에서 통계작성기준을 명시하고 e-나라지표는 '관련용어'에서 용어해설을 기술하고 있다.
- e-나라지표에서 '통계표'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
- e-나라지표는 '관련파일'을 통해 다른 매체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도록 파일링크를 걸어두고 있다.
- 보도자료의 서두에 담당 직원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다.

(2) 조사 정보

- 명시적으로 통계작성 목표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다만, e-나라지표에서 '지표설명' 부분을 통해 추론 가능하다.
- e-나라지표에서는 '통계표'를 통해, 보도자료에서는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 e-나라지표 '통계표' 중 주석에서 통계작성 범위를 명시하고, 보도자료는 서두에서 자료수집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 e-나라지표는 '지표해석'에서 작성항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고 보도자료는 서두에서 설명하고 있다.
- 대상기간, 실제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다. 다만, e-나라지표에서는 '통계주기'를 매년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보도자료의 서두에서 기준시점이 간단히 명시되어 있다.
- '작성방법'에서 조사방법을 간단히 명시하고 있다.
- e-나라지표의 경우 '지표설명'에 나타나 있고, 보도자료의 경우 붙임에 용어 설명이 나타나있다.
- 보도자료의 서두에서 공표방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향후 공포일정 예고 등은 없다.

(3) 모집단 및 표본 설계

- 보도자료는 '1. 전체 채무보증 현황'에서 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 보도자료의 경우, '1. 전체 채무보증 현황'에서, e-나라지표의 경우 '통계표의 주석'에서 명시하고 있다.

(4) 자료 집계 및 추정

- 해당사항 없음

제 2 절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의 통계품질을 여러 가지 지표로 진단한 결과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보고통계인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통계 특성상 조사통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으로 조사원 교육 및 관리와 관련된 문제, 무응답 처리, 통계표본 관련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본 통계의 작성절차별 품질진단 결과 종합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품질차원별로도 시의성/정시성과 일관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성 차원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나 전체적인 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 외에도 접근성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았다. 이제 품질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과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이용자 편의성 제고

1.1 현황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OPNI) 사이트는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의 종합 포털 사이트로 기능함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OPNI 시스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등 각 기업에서 제출한 소속 회사현황, 주주현황, 출자현황, 채무보증현황, 지주회사현황 등의 각종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총액, 부채, 자본총액, 자본금, 출자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내부지분율, 소유지배과리도, 의결권승수 등과 같은 주요정보는 기업집단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사이트에 집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 문제점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우선 공표되고 통계의 세부항목들은 OPNI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주된 통계제공 창구인 OPNI 사이트는 그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이용편의성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DB 이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OPNI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엑셀 파일에 일부는 필터가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는 필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필터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사용자가 다시 재편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알리는 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탭을 눌렀을 때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뷰어로 제공되는 자료 중 일부만 Excel파일로 제공되는데, 무엇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료제공에서도 여러 해에 걸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한 해씩 자료가 제공되어 사용상의 불편이 존재한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자료를 내려 받을 경우 자료파일을 내려 받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의 설치가 요구되어 에러가 발생하고 파일 다운로드가 되지 않기도 하며 크롬, 파이어폭스 등 타 웹 브라우저에서는 다운로드 자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이용편의성의 문제는 통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공정거래정책 관련 법령 변화 등에 따른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OPNI 사이트의 탭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용어가 일반 검색사이트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자료의 경우 2007년까지만 제공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2008년에 폐지되었다는 등의 언급이 없어 최신 데이터가 없는 이유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워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



<그림 2.3> OPNI 자료 다운로드 에러: Excel 파일 다운로드



<그림 2.4> OPNI 자료 다운로드 에러: 파일을 찾지 못하거나 시스템 장애

그 외에도 홈페이지의 업데이트와 구성도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이용자들은 불편사항으로 OPNI 사이트의 글씨가 작아 가독성이 낮고 홈페이지가 컴퓨터 스크린에 맞게 커지지 않고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 너무 작다고 불편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용자질문 및 답변 (Q&A), 고객의견 등의 페이지/메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다른 사이트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OPNI 홈페이지 하단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나 이용자들이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하고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찾고자 OPNI 사이트로는 바로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업집단공개시스템”이 링크가 되어 있으나 이 이름보다는 통상 “오프니”나 “OPNI”로 알려져 있어 링크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그림 2.5>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 홈페이지: Explorer



<그림 2.6>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 홈페이지: Crome



<그림 2.7>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1.3 개선방안

우선 OPNI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사이즈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림 2.5>는 24인치 모니터로 보는 OPNI 홈페이지 화면이다. 화면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더 작게 보이는 단점이 있다. 최소한 정렬방식이라도 가운데 정렬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OPNI 사이트에서 DB자료를 다운 받을 때 많은 경우 데이터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웹브라우저와의 호환성 문제로 아예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데 DB와 홈페이지를 재점검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하고 크롬과 파이어폭스 등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1년 이전 데이터는 PDF 파일로만 제공되고 있는데, 이 역시 Excel 등으로 제공되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겠다.

통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통계 설명자료(메타데이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통계 용어설명 외에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자료에 일반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소개하는 등 정보의 중요성 및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OPNI 사이트 홍보강화

2.1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보도자료의 형태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 발표하고, 8월에 OPNI 사이트에 채무보증현황과 관련 세부 자료를 을 공표한다. 이렇듯 OPNI 사이트는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 및 자료의 제공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이용자들은 OPNI 사이트가 이용해보면

개선해야할 부분도 많으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2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이용자들이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OPNI)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반이용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계를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떠한 자료가 OPNI 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한지를 모르고 있어 통계이용과 통계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범위가 기업집단관련 정보공개에만 있지 않고, 통계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의 주 업무가 통계작성·관리가 아니어서 통계전담 인원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홍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개선방안

OPNI 사이트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출발점으로는 매년 보도자료 발표 시 관련 세부자료가 OPNI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보도자료 중간에는 현재도 “이하 첨부자료를 포함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현황은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털사이트 ‘오프니(OPNI) (<http://groupopni.ftc.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이라는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으나 보도자료 전문을 꼼꼼하게 다 읽는 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구는 가능하다면 맨 앞이나 맨 뒤에도 삽입하고 여러 경로로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표 2.10> 통계품질 개선과제 요약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예상문제	비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NI 홈페이지 업데이트 - 정렬방식 수정 및 웹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점검·보완 - 데이터 파일 점검 및 보완 - 통계사용 용어설명 보완 - 통계 설명자료 (메타데이터) 보완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기업집단시스템(링크)에 “OPNI”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NI 사이트 가독성 향상 - 웹브라우저 호환성 향상으로 파일다운로드 편의 증대 - 데이터 관리 및 보완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 일반이용자들의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보완을 위한 비용발생 	<p>개선지원</p> <p>pp.24 -28, p.33, pp.54 - 60</p>
OPNI 사이트 홍보강화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공표 시 OPNI 사이트 안내문구 및 로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강화로 이용편의 및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형식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음 	<p>pp.60 - 61</p>

제 3 장 개선지원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통계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상호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통계이다.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통계인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에 대한 개선과제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제 1 절 이용자 편의성 제고

1. 개요

OPNI 사이트를 통하여 세부사항이 공표되는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존재한다.

2.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이용자 편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OPNI 홈페이지의 업데이트와 정렬방식 변경을 실시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페이지의 정렬방식을 화면 왼쪽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으로만 수정해도 OPNI 사이트에 대한 가독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인치 이상의 대형 모니터가 많이 보급되는 추세에 비추어 이 작업은 손쉽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OPNI 사이트는 최초 웹사이트 구축 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적절한 업

데이트를 수행하여 가독성을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다.

OPNI 사이트의 다른 문제인 웹 프로그램의 호환성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OPNI 사이트는 Explorer 위주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외에 Chrome이나 Firefox 등 여타 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잘 열리지 않거나 특히 자료 다운로드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웹 프로그램과 OPNI 사이트의 호환성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다운로드가 되지 않거나 파일이 깨지거나 사라진 경우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웹 프로그램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01년 이전의 자료들은 PDF나 Text파일로만 제공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Excel파일로 제공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OPNI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일반이용자들은 통계에 사용되는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반검색을 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이용자들의 통계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통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재도 제공하고는 있지만 좀 더 체계화해서 “용어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가능하다면 용어설명과 더불어 예도 제시하여 이해를 높이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정책 관련 법령 변화 등에 따른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예로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자료의 경우 2007년까지만 제공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2008년에 폐지되었다는 등의 언급이 없어 일반이용자들은 최신 데이터가 없는 이유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워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계 설명자료(메타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설명자료 제공의 경우는 통계청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의 통계 설

명자료 메뉴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PNI 홈페이지 하단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어 방문하기 쉬우나 역으로 이용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하고 대기업 집단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OPNI 사이트로는 바로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하단에 “기업집단공개시스템”이 링크가 되어 있으나 이 이름보다는 통상 “오프니”나 “OPNI”로 알려져 있어 링크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쉽게 되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기업집단 공개시스템(링크)에 “오프니”나 “OPNI”를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 개선과제 정리

구분	개선과제	세부사항
단기	이용자 편의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NI 홈페이지 업데이트 - 홈페이지의 웹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점검 및 보완 - 데이터 파일 점검 및 보완 - 통계 설명자료 보완 - 통계 용어해설 메뉴 보완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기업집단 공개시스템(링크)에 OPNI 추가

제 2 절 활용방법

1.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상호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통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로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며 출자 및 채무보증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통계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기본 출발점인 본 통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규제대상 대기업집단의 이름을 확정하여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확정되어야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들에게 채무보증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채무보증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소속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2008년 이후)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소속사는 i)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ii)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상호출자 금지, iii)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iv)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의 규제를 받는다.

2. 연구논문

유진수(2014)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대주주 지분율의 변화 및 주가의 변화를 주식시장에 상장된 일반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율뿐만 아니라 사업회사 지분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의 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의 주가는 크게 하락한 반면 사업회사의 주가는 크게 상승함으로써, 대주주가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높이는데 크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사업회사 지분증가율과 자사주 보유비율

	사업회사 지분의 증가율	인적분할 이전 자사주 보유비율
C사	18.08	17.67
O사	19.92	18.51
P사	19.55	19.18
Q사	8.06	7.35
R사	0	1.18
V사	18.69	17.32
VF사	17.08	19.99
C사	14.48	14.46

주: 자사주 보유비율은 인적분할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매년 4월 기준)를 기준으로 하였음. 다만 AF사의 경우 인적분할 이후 가장 가까운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음.

원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

자료: 유진수(2014) p.85.

위에 인용된 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표이다. 특히 이 표에 사용된 사업체의 자료 중 지분율 등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오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혹은 보도자료)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제 3 절 해외사례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은 정책목표 수립 및 실행에 목적을 두는 정책통계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하고 유일한 통계이다. 본 통계는 대기업 규제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조사·공표하는 통계로 해외의 동일통계나 유사통계는 찾을 수 없었다.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를 이용하는 대학교, 연구기관 및 법무법인의 산업정책, 규제 및 대기업집단 전문연구자 그룹에게도 자문을 구하였으나 해외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2012), 대규모기업집단관련 통합 업무매뉴얼.

공정거래위원회 (2012), 대기업집단지정 관련 서식.

공정거래위원회 (2014),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http://ftc.go.kr/laws/laws/popRegulation.jsp?lawDivCd=11&firstFtcRelLawNo=618>

유진수 (2014),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연구,” 『산업조직연구』 22(2), pp. 73-95.

통계청 (2014),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 정기통계품질진단.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관리시스템 <http://egroup.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http://groupopni.ftc.go.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결과보고 (보고통계용)

통 계 명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승 인 번 호		15205
작 성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품질진단팀	연구 원	모영규
	연구보조 원	장현희

- 점검을 위해 채택된 점검방법, 대상, 내용, 일정 등에 대하여 기술

1. 점검 방법

- 실사준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에 조사담당자(통계담당자) 1인, 조사 대상 사업체의 응답자(보고담당자) 10인과의 면담을 요청
- 점검대상 : 통계담당자, 보고담당자
- 점검내용 :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현장점검 및 관리체계, 응답자의 조사 이해도 및 응답체계 등을 현장방문 및 면접 등을 통해 점검

2. 면담(현장방문)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참석자	장소	주요 점검사항
9.22	000	공정거래위원회	관리체계
10.14	000	현대백화점	응답 용이성 및 정확성
10.14	000	현대자동차	응답 용이성 및 정확성
10.14	000	포스코	응답 용이성 및 정확성
10.14	000	홈플러스	응답 용이성 및 정확성
10.15	000	아모레퍼시픽	응답 용이성 및 정확성
10.15	000	에스케이	응답 용이성 및 정확성
10.21	000	에쓰-오일	응답 용이성 및 정확성
10.21	000	엘지	응답 용이성 및 정확성
11.11	000	신세계	응답 용이성 및 정확성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구 분	문제점	개선 의견
자료 보고 방법	신고마감이 압박하면 접속량증대로 서버의 응답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입력에 어려움이 많음	서버확장을 통한 속도개선
자료 보고 방법	계열회사의 수가 많은 경우 공정위 시스템에 주주를 개별 주주별로 입력하여 시간이 많이 걸림	보고시스템에 Excel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선
자료 보고 방법	보고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출력하는 경우 계열사별 자료를 일일이 출력하게 되어 출력에 시간이 오래 걸림	전체출력 기능을 보고시스템에 추가
자료 보고 방법	동일 자료를 중복되게 보고해야 함. 연중 변동사항을 보고한 후에도 대기업집단관리 시스템에 보고시 이미 수정한 사항이 연동되지 않아 처음부터 보고해야함	보고시스템을 점검하여 연중 보고되는 사항들이 연동되도록 조치하여 동일한 사항을 중복하여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



공표자료 오류 점검표

공 표 자 료 명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공 표 시 기	2014년 4월				
공 표 주 기	① 월	② 분기	③ 반기	④(1) 년	⑤ 부정기

통 계 명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승 인 번 호	15205	
작 성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진 단 일 자	2014년 8월 3일	
품질진단팀	연구 원	모영규
	연구보조 원	장현희

최근에 발간된 보도자료, 통계보고서(속보, 월보, 연보) 등의 통계간행물과 통계DB를 점검
(월보와 연보를 모두 발간하는 경우 최근의 월보와 연보를 각각 점검)

1 수치자료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1-1.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간행물과 통계 DB의 수치 일치 여부 - 최근 발행된 간행물과 자료생산기관의 DB를 비교하여 점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공개현황과 보도자료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연도별 기업집단 지분 및 지정현황'에서 계열사수가 2008년, 2012년, 2013년 각각 1씩의 오차가 발견되었음
1-2.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 시계열 자료에 단절이 없는지 확인 - 단절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원인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표6], [표11]에 2007년 데이터가 빠짐 데이터 빠진데 대한 이유가 없음
1-3. 통계개편 등으로 인한 통계작성방법 변경이 공표자료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통계작성방법이 메타자료에서 기술한 통계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e나라지표의 경우 통계작성방법이 있으나, 보도자료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1-4. 통계수치의 정확성 - 통계표의 가로합/세로합 불일치 확인 - 통계표에 비상식적인 수치 확인 - 시계열 상의 이상치(과대, 과소 수치)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2-1.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 - 통계표상 한글, 영문의 표기 위치, 방법 등의 통일 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의 일치성 - 항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다른 통계를 인용한 경우 출처에 있는 통계표와 일치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선 보도자료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e나라지표와 비교시, e나라지표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통계와 보도자료 데이터와 불일치 1. [표11] 06년 4월 합계 : 1,117 → 873.5 2. [표11] 06년 4월 평균 : 18.9 → 14.8 3. [표11] 11년 4월 합계 : 1,741.9 → 1554 4. [표11] 11년 4월 평균 : 31.7 → 30.7

2-3.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의 적절성			
- 통계표의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기호들이 알맞게 표기되고 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통계수치 표기의 일관성			
- 통계표 내 항목별 소수 자리 및 반올림 일치 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2-5. 단위 표기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개, % 등 통계표의 내용이해에 꼭 필요한 통계단위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용된 통계의 경우 출처의 단위와 일치하는지, 단위 환산이 정확한지 등 확인 - 단위 표기가 통계표의 일관된 위치에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주석 표시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표 이해에 꼭 필요한 주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p2의 장기 연도별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에서 단순히 금액기준 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구분 유무, 폐지 여부 및 시기 등도 필요한 정보이나 누락되었음 마지막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2-7. 자료 출처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한 통계표의 출처가 명기되었는지 확인 - 출처기관과 출처간행물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계표나 그래프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8. 도표, 그림 등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표나 그림이 정확한 수치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도표나 그림 등이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수치에 알맞은 크기나 영역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용어해설 부분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3-1. 용어정의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3-2. 인용한 통계의 경우, 자료를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일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간행물과 비교해서 동일 내용에 대한 용어사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영문 표기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용어의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 전체적으로 동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기타 오류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4-1. 목차, 색인 등과 본문의 일치성 - 통계표의 목차와 본문의 제목 및 페이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색인에 표기된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항 없음
4-2. 한글 및 영문 표기의 적절성 - 맞춤법, 오타, 누락, 영어단어 표기 등을 확인 - 의미에 맞는 영문 표기 여부, 영문 설명 시 문장이나 단어의 누락 등으로 의미가 왜곡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3. 통계표 제목의 적절성 - 제목이 통계표 내용을 대표하며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국제기구 제공자료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5-1. 국제기구 제공자료와 국제기구의 간행물 또는 DB 등의 자료와 일치 여부 - 제공한 자료와 국제기구 자료와의 수치 점검 - 제공한 통계 단위와 일치하는지, 단위 환산이 정확한지 등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제기구에 자료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5-2. 주석 표시의 합리성 - 통계표 이해에 꼭 필요한 주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제기구에 자료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5-3. 자료 출처의 명확성 - 인용한 통계표의 출처가 명기되었는지 확인 - 출처기관과 출처간행물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제기구에 자료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공표자료 오류 점검표

공 표 자 료 명	2013년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발표				
공 표 시 기	2013년 7월				
공 표 주 기	① 월	② 분기	③ 반기	④(1) 년	⑤ 부정기

통 계 명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승 인 번 호	15205	
작 성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진 단 일 자	2014년 8월 3일	
품질진단팀	연구 원	모영규
	연구보조 원	장현희

최근에 발간된 보도자료, 통계보고서(속보, 월보, 연보) 등의 통계간행물과 통계DB를 점검
(월보와 연보를 모두 발간하는 경우 최근의 월보와 연보를 각각 점검)

1 수지자료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1-1.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간행물과 통계 DB의 수치 일치 여부 - 최근 발행된 간행물과 자료생산기관의 DB를 비교하여 점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e-나라지표와 보도자료를 비교한 결과, 12년 4월 수치에서 0.1조원의 차이가 존재
1-2.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 시계열 자료에 단절이 없는지 확인 - 단절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원인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1-3. 통계개편 등으로 인한 통계작성방법 변경이 공표자료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통계작성방법이 메타자료에서 기술한 통계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e나라지표의 경우 통계작성방법이 있으나, 보도자료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1-4. 통계수치의 정확성 - 통계표의 가로합/세로합 불일치 확인 - 통계표에 비상식적인 수치 확인 - 시계열 상의 이상치(과대, 과소 수치)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표1, 2, 5, 7의 합계가 1만권의 오차가 있음. 이는 반올림, 반내림 등의 계산방법 때문으로 보이나,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설명 없음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2-1.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 - 통계표상 한글, 영문의 표기 위치, 방법 등의 통일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의 일치성 - 항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다른 통계를 인용한 경우 출처에 있는 통계표와 일치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표4의 경우 바로위에 서술된 채무보증 해소의 확대와 보증만기 합계액의 수치가 다름
2-3.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의 적절성 - 통계표의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기호들이 알맞게 표기되고 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통계수치 표기의 일관성 - 통계표 내 항목별 소수 자리 및 반올림 일치 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2-5. 단위 표기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개, % 등 통계표의 내용이해에 꼭 필요한 통계단위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용된 통계의 경우 출처의 단위와 일치하는지, 단위 환산이 정확한지 등 확인 - 단위 표기가 통계표의 일관된 위치에 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표7] 해소율 관련 단위 % 표기되어 있지 않음
2-6. 주석 표시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표 이해에 꼭 필요한 주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자료 출처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한 통계표의 출처가 명기되었는지 확인 - 출처기관과 출처간행물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계표나 그래프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8. 도표, 그림 등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표나 그림이 정확한 수치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도표나 그림 등이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수치에 알맞은 크기나 영역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용어해설 부분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3-1. 용어정의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3-2. 인용한 통계의 경우, 자료를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일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간행물과 비교해서 동일 내용에 대한 용어사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영문 표기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용어의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 전체적으로 동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보이나,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음

4

기타 오류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4-1. 목차, 색인 등과 본문의 일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표의 목차와 본문의 제목 및 페이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색인에 표기된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항 없음

4-2. 한글 및 영문 표기의 적절성 - 맞춤법, 오타, 누락, 영어단어 표기 등을 확인 - 의미에 맞는 영문 표기 여부, 영문 설명 시 문장이나 단어의 누락 등으로 의미가 왜곡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3. 통계표 제목의 적절성 - 제목이 통계표 내용을 대표하며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국제기구 제공자료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5-1. 국제기구 제공자료와 국제기구의 간행물 또는 DB 등의 자료와 일치 여부 - 제공한 자료와 국제기구 자료와의 수치 점검 - 제공한 통계 단위와 일치하는지, 단위 환산이 정확한지 등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제기구에 자료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5-2. 주석 표시의 합리성 - 통계표 이해에 꼭 필요한 주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제기구에 자료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5-3. 자료 출처의 명확성 - 인용한 통계표의 출처가 명기되었는지 확인 - 출처기관과 출처간행물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제기구에 자료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

발 간 물 명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발 간 시 기	2014년 4월 1일				
발 간 주 기	① 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1년	⑤ 부정기

통 계 명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승 인 번 호	15205	
작 성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진 단 일 자	2014년 7월 27일	
품질 진단 팀	연구 원	모영규
	연구보조원	장현희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1-1. 소개 「이용자를 위하여»,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등 이용자를 위한 소개부분이 있다.	e-나라지표 보도자료	이용자를 위한 소개부분 없음. e-나라지표에서는 통계상 유의점 및 각종의상 유의점이 있음
1-2. 부록(참고자료) 통계자료 활용에 참고 되는 내용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 통계작성기준, 산업 또는 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 등의 참고자료 수록	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관련용어'에서 용어해설이 서술되어 있음
1-3. 기호 통계표 등에 사용되는 각각의 기호들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사항없음	
1-4. 잠정치, 확정치 통계간행물에 잠정치를 수록할 경우 잠정치의 표시 및 설명과 확정치의 공표 예정 일자를 명시하고 있다. · 잠정치로부터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정치 산출 이유와 확정치 공표 시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없음	
1-5. 자료 출처 통계간행물에 수록된 통계분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출처를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게 간행물에 수록하고 있다.	e-나라지표	e-나라지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라고 출처 명시
1-6. 제공 매체 통계간행물 이외의 다른 매체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경로를 표시하고 있다. · 통계DB이용방법, 인터넷 사이트 주소, 마이크로데이터 구매 절차	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관련파일'을 통해 다른 매체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도록 파일링크를 걸어두고 있음.
1-7. 문의처 통계작성방법과 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 통계작성 또는 조사체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 있는 개별 직원에게 직접 연락되어야 한다.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서두에 담당 직원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음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2-1. 통계작성 목적 통계작성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유사통계와 차이점 포함	보도자료	통계목적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음. 다만, 보도자료의 '4. 14년 기업집단 지정 의의'에서 추론 가능함
2-2. 통계 연혁 통계의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현황'에서 주석을 통해 언급하고 있음
2-3. 통계작성 범위(대상) 자료수집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e-나라지표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서두에서, e-나라지표는 '작성방법'에서 수집 및 지정대상을 제시하고 있음
2-4. 적용 기준 국내·외 통계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에 적용된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과 그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사항없음	
2-5. 작성 항목 작성항목을 나열하고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e-나라지표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서두에서, e-나라지표는 '지표설명' 및 '지표해석'에서 작성항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명시함

<p>2-6. 작성 주기 대상기간, 기준시점, 작성주기, 실제 조사(보고)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p>	<p>e-나라지표</p>	<p>대상기간, 실제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음. 다만, e-나라지표에서는 '통계주기'를 매년이라 명시하고 있음</p>
<p>2-7. 자료수집 방법 조사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p>	<p>e-나라지표</p>	<p>e-나라지표의 '자료 출처'외에 조사방법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음</p>
<p>2-8. 자료수집 체계 현지에서 자료수집 하는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 조사체계, 보고체계 등</p>	<p>해당사항없음</p>	
<p>2-9. 자료수집 양식 견본 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을 수록하고 있다.</p>	<p>해당사항없음</p>	
<p>2-10. 자료수집 양식 변경 내역 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의 변경 내역이 설명되어 있다. · 조사(보고)항목 변경사항, 연도별 추가신설 항목 등 변경내역의 설명 수록 여부</p>	<p>해당사항없음</p>	
<p>2-11. 용어 설명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별도의 용어 설명 란의 할당 여부 등)</p>	<p>e-나라지표 보도자료</p>	<p>e-나라지표는 '관련용어'에서, 보도자료는 '별첨'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음</p>
<p>2-12. 공표 방법 결과의 공표 방법, 향후 공표일정의 예고 등이 있다.</p>	<p>보도자료</p>	<p>구체적인 공표일정 및 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p>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3-1. 목표 모집단 통계작성이나 표본추출을 위한 목표 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 목표 모집단이란 통계분석 단위에 대한 개념적인 모집단을 의미	보고자료 e-나라지표	보고자료는 별첨 'I. 지정개요'에서 목표 모집단 간략히 기술. e-나라지표는 '의의'에서 목표 모집단 추론 가능
3-2. 조사 모집단 조사나 통계작성의 실제 조사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 조사모집단이란 실제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단위의 모집단을 의미	보고자료 e-나라지표	보고자료는 서두와 첨부자료에서, e-나라지표는 '통계표'와 '작성방법'에서 조사의 실제 조사모집단을 명시
3-3. 모집단의 근접성 목표 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이 근접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 모집단의 커버리지(Coverage) 등	해당사항없음	
3-4. 표본틀(표본조사) 표본추출에 사용되는 표본틀을 설명하고 있다. · 표본틀이란 표본이 추출되는 단위들의 목록을 의미	해당사항없음	
3-5. 표본크기(표본조사) 표본설계 당시 목표로 하는 표본크기와 실제 조사된 표본을 명시하고 있다. · 목표 표본의 크기는 표본설계 시에 제시했던 표본크기임	해당사항없음	
3-6. 표본틀의 변경(표본조사) 표본틀의 변경여부 및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 조사대상의 발생, 소멸 변동사항 (예: 산업분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표본틀을 갱신	해당사항없음	
3-7. 표본틀 요약 정보(표본조사) 보고서에 표본틀의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해당사항없음	
3-8. 표본설계 방법(표본조사) 층화표본추출 등과 같은 표본설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사항없음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4-1. 가중치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의 부여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모수를 추정할 때 또는 통계자료를 결합할 때 등	해당 사항 없음	
4-2. 모수추정 방법(표본조사) 표본조사 자료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사항 없음	
4-3. 표본오차 추정치 제공(표본조사) 표본조사의 경우에 표본오차의 추정치(표준오차, 변동계수 등)를 제공하고 있다. · 모수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출하는데 표본오차 추정치가 어떻게 사용되며, 신뢰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해당 사항 없음	
4-4. 계절조정 기법 시계열에서 계절요인, 불규칙요인 등을 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사항 없음	
4-5. 품질수준 정보 표본오차, 비표본 오차, 대표도 등 통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사항 없음	
4-6. 무응답 현황 무응답 현황(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을 보여주는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 최소한의 무응답 유형(부재, 응답거부 등)을 제시	해당 사항 없음	
4-7. 응답자 분석 응답자와 무응답자 그룹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수집자료의 편향(bias)정도를 설명	해당 사항 없음	
4-8. 자료집계 무응답 항목을 보완하는 대체(Imputation)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사항 없음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

발 간 물 명	2013년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발표				
발 간 시 기	2013년 7월 30일				
발 간 주 기	① 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1년	⑤ 부정기

통 계 명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승 인 번 호	15205	
작 성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진 단 일 자	2014년 7월 27일	
품질 진단 팀	연구 원	모영규
	연구보조원	장현희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p>1-1. 소개</p> <p>「이용자를 위하여」,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등 이용자를 위한 소개부분이 있다.</p>	e-나라지표	이용자를 위한 소개내용은 없음. 다만, e-나라지표에서 '유의점'이 간단히 명시되어 있음.
<p>1-2. 부록(참고자료)</p> <p>통계자료 활용에 참고 되는 내용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기준, 산업 또는 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 등의 참고자료 수록 	<p>보도자료</p> <p>e-나라지표</p>	<p>보도자료는 '붙임'에서 통계작성기준을 명시. e-나라지표는 '관련용어'에서 용어해설을 기술.</p>
<p>1-3. 기호</p> <p>통계표 등에 사용되는 각각의 기호들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p>	해당사항없음	
<p>1-4. 잠정치, 확정치</p> <p>통계간행물에 잠정치를 수록할 경우 잠정치의 표시 및 설명과 확정치의 공표 예정 일자를 명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정치로부터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정치 산출 이유와 확정치 공표 시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없음	
<p>1-5. 자료 출처</p> <p>통계간행물에 수록된 통계분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출처를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게 간행물에 수록하고 있다.</p>	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통계표'에서 출처를 명시.
<p>1-6. 제공 매체</p> <p>통계간행물 이외의 다른 매체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경로를 표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DB이용방법, 인터넷 사이트 주소, 마이크로데이터 구매 절차 	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관련파일'을 통해 다른 매체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도록 파일링크를 걸어두고 있음.
<p>1-7. 문의처</p> <p>통계작성방법과 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 또는 조사체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 있는 개별 직원에게 직접 연락되어야 한다. 	보도자료	서두에 담당 직원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음.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p>2-1. 통계작성 목적</p> <p>통계작성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통계와 차이점 포함 	e-나라지표	명시적으로 통계작성 목표가 나타나 있지 않음. 다만, e-나라지표에서 '지표설명' 부분을 통해 추론 가능
<p>2-2. 통계 연혁</p> <p>통계의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p>	e-나라지표 보도자료	e-나라지표에서는 '통계표'를 통해, 보도자료에서는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음.
<p>2-3. 통계작성 범위(대상)</p> <p>자료수집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p>	e-나라지표 보도자료	e-나라지표 '통계표' 중 주석에서 통계작성 범위 명시. 보도자료는 서두에서 자료수집 대상 명시.
<p>2-4. 적용 기준</p> <p>국내·외 통계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에 적용된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과 그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p>	해당사항없음	
<p>2-5. 작성 항목</p> <p>작성항목을 나열하고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p>	e-나라지표 보도자료	e-나라지표는 '지표해석'에서 작성항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제시. 보도자료는 서두에서 설명.

<p>2-6. 작성 주기</p> <p>대상기간, 기준시점, 작성주기, 실제 조사(보고)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p>	<p>e-나라지표 보도자료</p>	<p>대상기간, 실제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음. 다만, e-나라지표에서는 '통계주기'를 매년이라 명시하고 있음. 보도자료의 서두에서 기준시점 간단히 명시되어 있음.</p>
<p>2-7. 자료수집 방법</p> <p>조사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p>	<p>e-나라지표</p>	<p>'작성 방법'에서 조사방법 간단히 명시함</p>
<p>2-8. 자료수집 체계</p> <p>현지에서 자료수집 하는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p> <p>· 조사체계, 보고체계 등</p>	<p>해당사항없음</p>	
<p>2-9. 자료수집 양식 견본</p> <p>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을 수록하고 있다.</p>	<p>해당사항없음</p>	
<p>2-10. 자료수집 양식 변경 내역</p> <p>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의 변경 내역이 설명되어 있다.</p> <p>· 조사(보고)항목 변경사항, 연도별 추가신설 항목 등 변경내역의 설명 수록 여부</p>	<p>해당사항없음</p>	
<p>2-11. 용어 설명</p> <p>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별도의 용어 설명 란의 할당 여부 등)</p>	<p>e-나라지표</p>	<p>e-나라지표의 경우, '지표설명'에 나타나 있고, 보도자료의 경우 붙임에 용어 설명이 나타나있음</p>
<p>2-12. 공표 방법</p> <p>결과의 공표 방법, 향후 공표일정의 예고 등이 있다.</p>	<p>보도자료</p>	<p>보도자료의 서두에서 공표방법 언급. 향후 공표일정 예고 등은 없음</p>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3-1. 목표 모집단 통계작성이나 표본추출을 위한 목표 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 목표 모집단이란 통계분석 단위에 대한 개념적인 모집단을 의미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1. 전체 채무보증 현황'에서 모집단을 명시하고 있음
3-2. 조사 모집단 조사나 통계작성의 실제 조사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 조사모집단이란 실제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단위의 모집단을 의미	보도자료 e-나라지표	보도자료의 경우, '1. 전체 채무보증 현황'에서, e-나라지표의 경우 '통계표의 주석'에서 명시하고 있음
3-3. 모집단의 근접성 목표 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이 근접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 모집단의 커버리지(Coverage) 등	해당사항없음	
3-4. 표본틀(표본조사) 표본추출에 사용되는 표본틀을 설명하고 있다. · 표본틀이란 표본이 추출되는 단위들의 목록을 의미	해당사항없음	
3-5. 표본크기(표본조사) 표본설계 당시 목표로 하는 표본크기와 실제 조사된 표본을 명시하고 있다. · 목표 표본의 크기는 표본설계 시에 제시했던 표본크기임	해당사항없음	
3-6. 표본틀의 변경(표본조사) 표본틀의 변경여부 및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 조사대상의 발생, 소멸 변동사항 (예: 산업분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표본틀을 갱신	해당사항없음	
3-7. 표본틀 요약 정보(표본조사) 보고서에 표본틀의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해당사항없음	
3-8. 표본설계 방법(표본조사) 층화표본추출 등과 같은 표본설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사항없음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4-1. 가중치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의 부여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모수를 추정할 때 또는 통계자료를 결합할 때 등	해당사항없음	
4-2. 모수추정 방법(표본조사) 표본조사 자료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사항없음	
4-3. 표본오차 추정치 제공(표본조사) 표본조사의 경우에 표본오차의 추정치(표준오차, 변동계수 등)를 제공하고 있다. · 모수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출하는데 표본오차 추정치가 어떻게 사용되며, 신뢰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해당사항없음	
4-4. 계절조정 기법 시계열에서 계절요인, 불규칙요인 등을 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사항없음	
4-5. 품질수준 정보 표본오차, 비표본 오차, 대표도 등 통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사항없음	
4-6. 무응답 현황 무응답 현황(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을 보여주는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 최소한의 무응답 유형(부재, 응답거부 등)을 제시	해당사항없음	
4-7. 응답자 분석 응답자와 무응답자 그룹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수집자료의 편향(bias)정도를 설명	해당사항없음	
4-8. 자료집계 무응답 항목을 보완하는 대체(Imputation)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사항없음	